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설명회

일시 : 2006. 3. 3(금) 오후 2:00

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요약)

구 분	내 용	규 제 내 용	벌 칙	위 치(P)
불법 스팸어 이용제한	제50조의4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KISA의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이용제한 조치 (유동IP 이용자 포함) ▶ 스팸어가 등록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제한할 수 있는 범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서비스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거나 불법에 악용된 특정서비스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_1)	14P ~ 15P
불법 스팸어 정보제공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KISA의 통보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요청정보 제공 (유동IP 이용자 포함) ▶ 회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요구시 불법스팸어의 정확한 정보 제공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8P ~ 19P
불법스팸을 하게 한자 규제 신설	제6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스팸어와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자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스팸어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 불법스팸어에게 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 이용자 관리 소홀로 지속적 불법스팸행위에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7P ~ 59P
기술적 조치 규제 강화	제50조 제6항	▶ 규제대상에 불법스팸어 신원 또는 출처 은폐를 위한 기술적 조치 추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40P, 46P ~ 47P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규제 신설		▶ 마약, 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의 스팸발송행위 규제 신설	는 1년 이하의 징역	55P

1) 정보통신망법 상의 처벌규정은 없으나, KISA의 이용제한을 불이행한 경우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CONTENTS

[목 차]

I. 개 요	4
1. 스팸 정의	4
가. 대표적 정의	4
나. 특성	4
2. 스팸 유형	6
가. 전송유형별 분류	6
나. 콘텐츠별 분류	8
3. 스팸규제법령	9
II.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12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2
가.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12
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권한	16
다. 사업장 출입 · 검사 권한	20
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3
마. 사업자 자율규제	25
2. 광고전송자	32
가.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32
나.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44
다. 기타 매체	51
라. 공통 준수 사항	54
3. 광고전송의 위탁 또는 하계 한 자	56
가. 광고전송 위탁 행위	56
나. 광고를 하계 한 행위	57
[부록 1]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2005. 12. 30 개정)	60
[부록 2] 스팸방지 사업자 표준약관 예시	68
[참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	70

I. 개요

1. 스팸 정의

가. 대표적 정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단 말기로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나. 특 성

① 원하지 않음(unwanted) 또는 요청하지 않음(unsolicited)

스팸메일에 대한 핵심적인 특징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팸의 최종 목적지인 수신자 입장에서 스팸을 판별하는 가장 기본 요소로, 전송자와 수신자 사이의 어떤 사전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② 상업성(Commercial)

전송되는 이메일의 목적이 상업성을 띠고 있다면 이 또한 스팸을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수신자가 원하는 상업성 이메일도 있기 때문에 상업성이라는 요소가 스팸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다만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는 비영리정보보다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스팸이 되는 사례가 많다.

③ 대량성(Bulk)

스팸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대량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망 환경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대량전송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우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만 또는 수백만 통의 스팸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전송뿐 아니라 이메일주소 등 수신자 연락처 수집, 생성이 모두 자동화됨으로써 대량 스팸발송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대량의 스팸은 네트워크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차단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④ 기타 특징

스팸은 기술적 조작을 통하여 전송자의 신원을 숨기고 반사회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불쾌한 내용을 포함하며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다. 또한 대부분의 스팸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판매된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달된다.

2. 스팸 유형

가. 전송유형별 분류

이메일, 팩스, 메신저, 팝업 등의 매체는 전송유형이 동일한데 반해 휴대전화는 다양한 전송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략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SMS (Short Message Service) 스팸²⁾

■ 회신번호(‘from’)란에 이동전화 번호만 입력

- 다른 내용없이 본문 및 회신번호란에 이동전화 번호나 일반 전화번호만 남겨 이용자가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음성광고로 연결

■ 사적인 메일로 위장

- 본문에 “오빠, 전화줘” 등의 문구로 광고가 아닌 사적 메시지로 위장하고 회신번호란에 이동전화 번호를 남김

2)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단문 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회신번호란에 Call-back URL 입력

- 회신번호란에 전화번호 대신 Call-back URL을 입력, 통화버튼을 누르면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어 해당사이트로 이동

◆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스팸³⁾

■ 회신번호란에 개인 이동전화번호 입력 후 무선인터넷으로 연결을 유도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메시지를 전달

- 회신시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어 광고성 사진, 동영상, 음악, 그림, 이미지 등이 나오거나, 전화가 연결되어 MMS를 보낸 사업자 및 이용할 서비스에 대한 ARS 광고가 나옴
- 또는, 메시지 수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MMS에 연결되어 바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사진, 그림 등이 나옴

◆ 음성스팸⁴⁾

■ 수신자와 전화를 연결하여 일방적으로 녹음된 음성광고를 전송

- 유선전화에 ACS를 설치하여 대량 전송
- 인터넷전화로 대량 전송

3)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사진, 동영상, 음악, 그림,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함

4)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람이 직접 광고내용을 전달하거나 녹음된 광고내용을 전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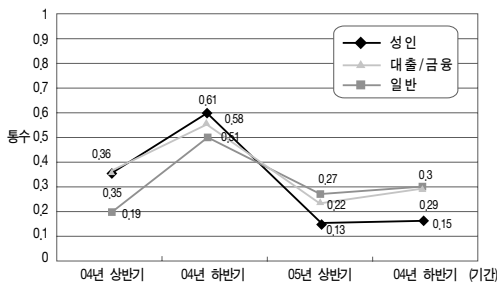
■ 번호만 남긴 후 끊어 수신자의 자발적 접속 유도

- 벨이 1~2번 울린 후 끊는 방식으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속을 유도⁵⁾
- 특수번호를 직접 남기는 방식과 이동전화 번호나 일반번호를 남긴 후 호기심에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광고내용과 함께 특수번호를 안내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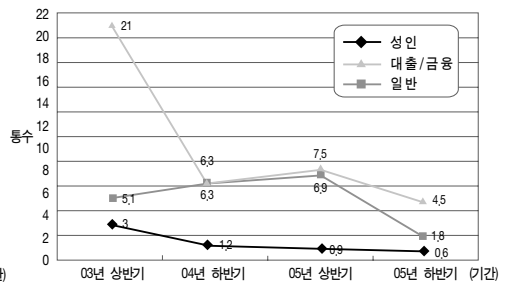
■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텔레마케팅

나. 콘텐츠별 분류

이메일 및 휴대전화 이용자 대상으로 수신한 스팸의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대략 일반 재화 및 서비스 / 성인물 / 대출·금융 등으로 분류된다.



<콘텐츠별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추이>



<콘텐츠별 이메일스팸 수신량 추이>

5) 이러한 행위를 '원 링(one-ring)'으로 지칭하고자 함. 이는 '03년 일본에서 유행했던 방식(일명 '원기리(ワンリ): '한번만 울리고 끊는다'는 일본어)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발신번호 표시기능을 악용하여 호출음을 1번만 울린 후에 회선을 절단, 의도적인 '불완료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임

3. 스팸규제법령

◆ 개정 정보통신망법('05.12.30 개정) 스팸규제조항

조 문	규 제 내 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의 제한		
제50조1항	•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2항	•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1. 사전 거래 관계자 제외 2. 통신판매업자 및 전화권유사업자 제외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3항	• 오후9시~아침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4항	• 광고시 표기의무	이메일, 전자적 전송매체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5항	• 광고시 표기의무	전화, Fax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6항	• 수신거부, 동의철회 회피방지 기술 금지 • 전화번호, 우편주소를 자동생성 기술 금지 •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금지 • 광고전송 정보 은폐 기술 금지(전송지 위작, 변경우)	전 체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제50조7항	• 수신거부시 금전적 비용 수신자부담 금지	전 체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2의1항	• 운영자 동의 없는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금지	이메일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제50조의2의2항	• 1항 위반한 전자우편주소 판매, 유통 금지		
제50조의2의3항	• 1,2항 위반 전자우편주소 이용 금지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3의1항	• 광고전송 위탁시 관리, 감독 의무	전 체	
제50조의3의2항	• 손해 배상책임시 위탁받은 자 소속직원으로 간주		

조 문	규 제 내 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제50조의4	정보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4의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공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수신자가 거부할 시 · 불법스팸 전송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50조의4의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제공 거부 내용 이용약관에 포함 		
제50조의4의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제공 거부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의무 (선조치 후통보 가능)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전 동의 의무 및 용도/삭제방법 등 고지의무 	애드웨어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제50조의6의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부장관의 스팸차단 및 신고프로그램 개발, 보급 	정통부	
제50조의6의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SW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지원 		
제50조의6의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및 보급, 지원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7의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운영자 거부 의사에 반하는 게시 금지 	게시판	3천만원 과태료
제50조의7의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운영자는 삭제 조치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 금지		1년 징역, 1천만 벌금
제55조	자료제출 등		
제55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부장관의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등	1천만원 과태료
제55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스팸전송자에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등 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 		
제55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출입하여 업무현황, 장부 및 서류 검사 		
제55조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명령 		

조 문	규 제 내 용	규제대상	처벌내용
제55조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개시 전 사업자에게 7일전 통보, 긴급시 선조치 가능 	정통부	
제55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목적 출입시 증표 및 성명, 시간, 목적 문서 교부 		
제55조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위해 보호진흥원에 필요 지원 요청 		
제56조	권한의 위임 위탁		
제56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장에게 일부 및 전부를 위임 	정통부	
제56조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조는 전산원에 위탁 		
제56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조1항, 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보호진흥원에 위탁 		
제56조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조6항을 56조3항에 따라 진흥원 직원에 준용 		
제67조	과태료		
제67조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성 정보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의뢰자 등 처벌) 	전 체	3천만원 과태료

II.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특히, 스팸과 관련하여서는 광고전송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네트워크나 호스팅 등)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가.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정보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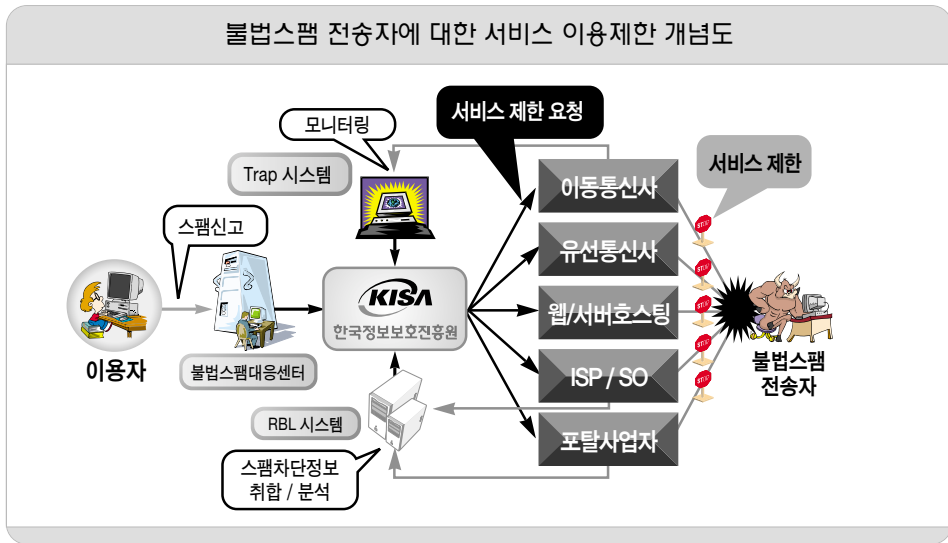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광고 전송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광고 전송을 중계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스팸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전송 중계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 자율규제 영역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약관상에서 어떤 경우에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시한 후 조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 중계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스팸규제에 큰 효과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② 불법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3.31 이전의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과 관련하여 전송 중계 역무를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상황으로 i) 광고 전송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ii) 이용자가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iii) 이용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한 경우를 더 추가하였다.

이는 '05. 7월부터 정통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사업자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의 i)과 ii)의 경우가 주로 ‘기술적 측면’의 스팸차단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면, 개정법에 추가된 iii)은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전체를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거부할 수 있는 ‘정책적 측면’의 자율규제이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건 또는 Trap 등을 이용하여 자체 적발한 건 중 법 위반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건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
- (2) 정보통신부 장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 위임)이 선별된 건에 대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⁶⁾

6) 유동IP 이용자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한 대상이 됨

(3) 이용제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필요조치 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조치결과 통보

※ 담당자 고지 후 24시간(근무일 기준) 내 필요조치가 불가한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필요조치 가능시간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이용제한 요청 및 수행결과 통보 시스템

- 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이용제한 명단(Excel 파일)을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 해당란에 게시
- ㄴ.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SMS 등으로 고지
- ㄷ. 각 사업자 담당자는 내용 확인 후 24시간내 필요조치하여 그 결과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통보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 해당란에 게시

③ 불법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범위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전송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특정 서비스에만 국한될 수도 있다.

전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해당 전송자가 신청한 모든 서비스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거나 불법에 악용된 특정서비스만 식별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권한

정보통신망법 제55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조치
2.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①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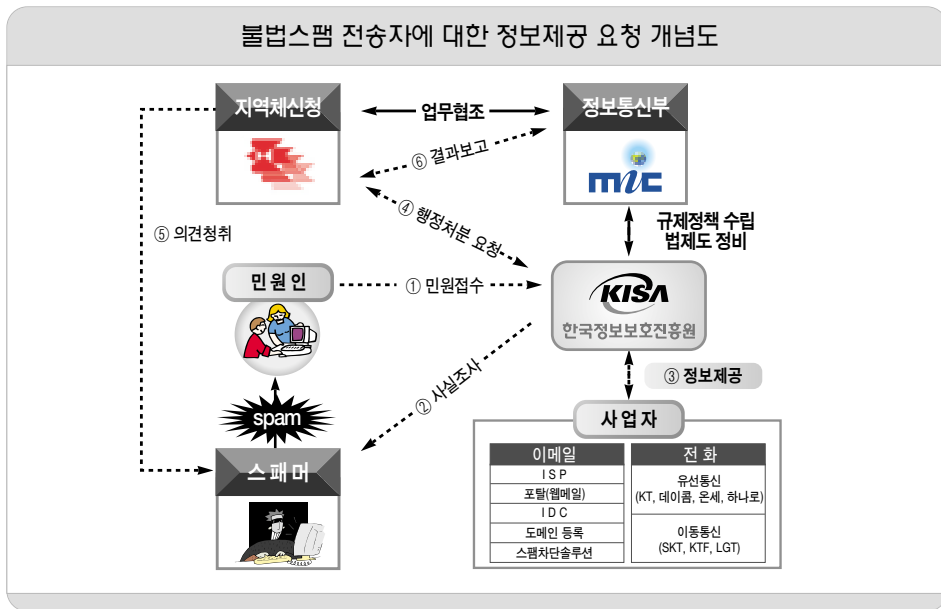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려는 선량한 광고 전송자가 아닌 스팸 전송자는 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추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 불법 스팸 전송자에게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이러한 악성 스팸 전송자를 찾아내 최종적으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보유한 스팸 전송자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의 연락처 등 인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절차

개정법에서는 현행법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불법 스팸 전송자에게 i) 시정조치 ii) 과태료 부과 iii)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 위임)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⁷⁾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 관련 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요구할 수 있는 인적 정보의 범위나 요구를 할 수 있는 목적 등이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부 장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 위임)이 불법 스팸 전송자에게 법적 처벌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건 또는 Trap 등을 이용하여 자체 적발한 건을 사실조사 하는 과정에서 스팸 전송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건 선별
- (2) 정보통신부 장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 위임)이 선별된 건에 대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의 관련 정보 제공 요청⁸⁾
- (3)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48시간 내 필요조치 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조치결과 통보

- ※ 담당자 고지 후 48시간(근무일 기준) 내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과태료부와 훈령 등의 관계 조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다만, 요구기간 내 필요조치가 불가한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필요조치 가능 시간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정보제공 요청 및 요청정보 전달 시스템

- ㄱ.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정보제공 요청 명단(Excel 파일)을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 해당란에 게시
- ㄴ.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SMS 등으로 고지
- ㄷ. 각 사업자 담당자는 내용 확인 후 48시간내 해당 정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이메일로 제공하거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 해당란에 게시

8) 해당 스팸발송자가 유동IP 이용자이거나, 발신전화번호를 조작한 자 (이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 수신시각 및 수신번호 정보 제공)까지 포함함

③ 이용자의 최신정보 갱신 의무

다만,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온라인상으로 별도의 신분 확인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가입이 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매우 간소함에 따라 이용자 정보의 정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개정법 및 그에 따른 과태료부와 훈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스팸 전송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충분한 자료나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보다 철저한 회원정보(비회원 이용자 포함) 관리가 요구되며, 회원의 최신 정보를 갱신·유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 출입·검사 권한

정보통신망법 제55조(자료제출 등)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개 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⁹⁾에 대해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위임)가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현황 및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장 출입·검사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회원관리 실태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스팸발생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9)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인 '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참조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요구시간 내 미제출한 경우와 잘못된 자료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장 출입·검사를 통해 요구시간 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사업자 내부 절차를 시정토록 권고하거나,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정확한 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장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과태료부와 훈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사업장 출입·검사 절차

사업장 출입·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위임)는 검사 개시 7일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검사내용 등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2) 검사자는 검사권한의 증표 및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검사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계인에게 문서로 제출

(3) 관련 장부·서류 검토, 시스템 모니터링, 관계자 인터뷰 등 검사 실시

(4)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시정권고

사업장 출입 · 검사 계획 통지서 양식

1. 대상	
2. 관련 근거	
3. 일 시	
4. 검사자	
5. 검사 사유	
6. 검사 내용	

2006. 3. 3

정보통신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직인

※ 통지서 양식 외 대외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55조(자료제출 등)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개 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사업장 검사 외에 행정처분의 하나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정명령 권한은 이 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규정 중 일부 별척이 없는 의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 의해 광고전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탁받은 자가 불법 광고를 전송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광고전송을 위탁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스팸규제 법규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과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외에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조치가 미흡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스템을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좀비 PC 등 최근의 스팸전송기법은 침해사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스팸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다.¹⁰⁾

이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 [참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中) 참조

마. 사업자 자율규제

① 개요

스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중 하나는 이 문제가 법적 규제나 자율적 규제, 기술적 대응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을 회피할 수 있는 신종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적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처벌 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제가 스팸 전송자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날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에 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같은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규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스팸 전송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다 쉽게 불법행위가 인지될 수 있다.

스팸으로 인한 피해자가 결국은 자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거나 자사 시스템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방지를 위한 노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주요 자율규제 사항

■ 표준이용약관 도입 등 사업자 공동대응

- 특정 사업자의 규제 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 또는 동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규제수준 일치 필요

- 제공 서비스의 목적 외 이용행위 금지, 각종 불법행위 이용시 서비스 제한(서비스 해지 포함) 실시 및 관계 기관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이용약관¹¹⁾ 도입
- 스팸방지 성공사례 공유 및 SPF, RBL¹²⁾ 등 필요기술 공동 채택 등¹³⁾

■ 서비스 계약시 본인확인 및 사전심의 강화

- 서비스 계약시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 강화 및 제출한 연락처로 회신가능 여부 확인
 - ※ 예시 : 가입시 회원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전송하여 인증
- 자체 스팸발송자 list를 관리함으로써 스팸발송자의 스팸발송 목적 신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특정 목적의 서비스 또는 다량 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이용목적에 명확히 하는 사전심의 강화
 - ※ 제3의 기관이나 협회 등에 사전심의 업무 수행을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음
- 제3자에게 재임대할 목적의 서비스 다량 신청 제한
- 이용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최신정보 유지 노력

11) 표준약관 예시는 [부록 2] 참조

12) www.spamcop.or.kr

13) 2004. 6월, 미국에서는 MS, 야후, AOL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심으로 ASTA(Anti-Spam Technical Alliance)라는 기술연맹을 만들어 스팸방지정책 및 스팸에 효과가 있는 기술을 공동 도입한 바 있음

■ 불법행위 사후 모니터링 등

-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 060 등 특수전화번호, 무료 정보통신서비스 (카페, 블로그, 호스팅 등)
- 스팸전송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 대한 스팸방지 교육 및 주기적 회원정보 갱신 · 관리

- 스팸전송으로 신고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 스팸발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
 - ※ 다량 착신전환 이용자, DOD/DID 이용자, 다량 도메인 등록자 등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다량 신청한 후 제3자에게 책임대하는 자 등

- 이용자가 원할 경우 특정 식별자에 대한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
 - ※ 현재 이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060 문자 및 음성 차단 서비스' 참고
- 자사 또는 타사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자체 고충처리센터 운영

■ 민 · 관 협력

-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및 정보제공 업무 시스템화
- 자체 고충처리센터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와의 상호 업무협력 관계 구축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

- 이용계약체결시 이용자 신원확인 강화 및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를 갱신하도록 노력한다.
- 자체 스팸발송자 list를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제한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시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약에 따라 경고, 이용정지, 서비스 해지 등 자율규제하고, 민원인이 요청하고 해당 민원건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일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 특수목적의 서비스 제공 계약시에는 내용을 사전심의하여 불법적인 서비스를 사전예방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에 의거한 기간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년. 다만, 이중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는 6월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 모든 도메인 네임 등록자 및 호스트는 이메일 전송 경로 인증을 위해 각자의 도메인 네임 서버(DNS)에 SPF(Sender Policy Framework)를 출판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포트 25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필요하다면 호스트 및 제공자 네트워크로 한정하여 포트 25를 통하여 이메일을 송, 수신을 허용한다. 이용자가 이를 꼭 이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포트 25 사용이 허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스팸차단리스트(RBL)' 를 수신 메일서버에 적용하여 스팸을 차단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확장자를 가진 이메일 파일 첨부물을 차단하거나 내용 속성에 따라 이메일 파일 첨부물을 필터링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움직임이나 그러한 움직임의 출처를 판단하기 위하여 송·수신 이메일 유통량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손상된 네트워크 요소를 관리하고 스팸의 출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과정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다른 네트워크 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 간 유기적 체계를 구축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에게 자체 보안정책 및 절차를 공지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체 SMTP 서버가 오픈릴레이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배달실패 공지(Non-delivery notices-NDN)는 적법한 이메일에 한하여 발신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모든 도메인 네임, DNS 기록 및 해당 IP 주소 등록 기록(WHOIS, SWIP, RWHOIS)이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로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그들의 (공개적으로 라우팅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IP 주소가 정확한 최신 DNS 및 reverse DNS 레코드, WHOIS 및 SWIP 엔트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LAN 운영자는 RFC(Request for Comments)1918에 의한 사설망 주소만 이용하여야 하고, 공공망 주소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ISP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기성 또는 조작된 헤더를 포함한 이메일 송신을 금지한다. 헤더 추적 정보는 정확하고 RFC822, RFC2822를 포함한 관련 RFC와 일치해야 하며 참조 도메인 및 IP 주소는 정확한 최신 등록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 · 무선 통신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 이용계약체결시 이용자 신원확인 강화 및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를 갱신 하도록 노력한다.
- 자체 스팸발송자 list를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제한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시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약에 따라 경고, 이용정지, 서비스 해 지 등 자율규제하고, 민원인이 요청하고 해당 민원건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일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 특수목적의 통신 서비스 제공 계약시에는 내용을 사전심의하여 불법적인 서비스를 사전예방 하여야 한다.
- 계약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은 회선이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에 의거한 기간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한다.
 -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 · 종료시간
 - 다. 발 ·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년. 다만, 이중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는 6월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월

- 전송자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발신번호 조작 등 기술적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사 네트워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사 통신이용자가 스팸을 대량전송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스팸 대량전송자 적발시 경고, 이용정지, 서비스 해지 등 자율규제하여야 한다.
- 원래 번호부여 목적을 벗어나 전국 대표번호, 평생번호, 일반번호, 이동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성인정보 또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스팸발송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자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사 회선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불법 스팸 민원 접수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이관하는 등 불법 스팸전송자 적발 및 단속에 대한 정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팸을 많이 전송하는 특정 식별번호(prefix)에 대해 일괄차단서비스를 제공한다.

2. 광고전송자

가.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① 개요

수신자의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지난 2005. 3. 31일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Opt-in’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방문 판매법에 의한 전화권유사업자 등은 기존 법률에 1차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Opt-in’ 규제 예외대상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나 전화권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나 소관부처가 해당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한다.

‘Opt-in’ 규제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규제사항이며, 이외에도 광고 전송할 때에 법적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광고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재전송이 금지되는 점은 이메일 등 타 매체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하다.

② 준수사항

■ 사전동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 번호 조합을 통해 얻은 전화번호 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구입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구할 목적으로 사전동의없이 SMS, MMS를 전송하거나 음성전화를 거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고지하여야할 사항은 광고내용, 전송매체(방법) 등이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보다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 ※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면사전동의 확보시 관할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또한, 외부 업체와 마케팅 제휴를 할 경우에 자사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외부 업체 마케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전송매체(방법) 등에 대한 고지방법은 수신자가 쉽게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 예컨대, 신규 회원가입하는 이용자에게 광고수신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한다면, 이용약관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회원정보 입력시 읽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이용자가 광고수신 여부에 표시하지 않고 회원가입 동의를 선택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광고수신 여부에 표시할 것을 재고지하는 창이 뜨도록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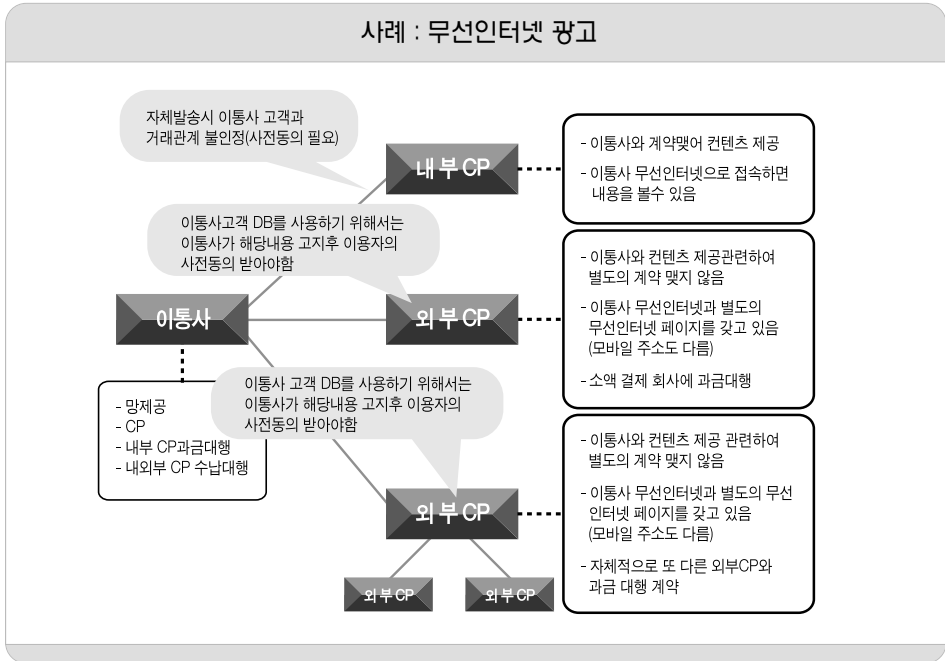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거래관계나 동의를 받는 주체의 기본단위는 개별 사업자이며, 개별 사업자가 온·오프라인 상의 ‘백화점’¹⁵⁾에 입점해 있는 경우 주체의 단위가 해당 백화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때에는 해당 백화점이 백화점 명의로 계약(회원가입 등)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광고발송의 주체 역시 백화점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 주체가 백화점이 된다면, 백화점은 내부 입점 업체(CP) 중 동종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발송할 수 있는 대신, 수신거부를 일괄 처리하여야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과태료부과, 서비스제한 등)을 져야 한다.

15) 유선인터넷의 포털사이트가 대표적인 온라인 ‘백화점’이다. 여러 개별 CP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용자는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며, 광고도 개별 CP가 아닌 포털사이트에서 모아서 발송하게 된다.

[거래관계 및 사전동의 인정하는 기본단위]
발송주체 = 수신거부처리주체 = 법적책임



-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을 특정화할 수는 없으나, 향후 문제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가 객관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동의범위 내에서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데, 추후 수신자가 동의철회를 하게 되면 별도의 동의범위가 취소됨은 물론 사전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있다는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동의를 얻은 업체가 업체명을 바꾸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컨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이의 광고전송자는 광고전송주기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자사의 광고전송주기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전송주기를 설정함으로써 광고수신에 사전동의한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3자와 사업체를 합병하거나 상속·양도할 경우, 광고 내용이 동일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업체명이나 전화번호 등이 동일하다면 기존의 광고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신동의철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②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 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하며, 전송자에게 다른 영업점이 있다면 그들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광고 재전송을 금지해야 한다.
 - 수신동의를 얻어 광고를 전송하였으나 수신자가 사후에 수신동의철회를 한 경우에는 수신동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제2항 위반 즉 수신동의없는 광고 전송으로 인정된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를 하는 자가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각 해당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 ※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확인하여 다음번 광고부터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전송 허용시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 광고전송시 표시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은 다음의 위치에 명시한다.

- ▶ SMS 및 MMS 광고 : 본문 시작부분에 명시
- ▶ 음성광고 : 광고내용 시작 전에 안내

- 전송자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 약칭을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올바른 전송자 명칭 표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신자가 업체명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라면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통제책임을 지고 있는 상위단 업체명(온·오프라인 ‘백화점’ 등)을 병행 표기한다.

※ 예컨대, 무선인터넷 내부CP의 경우 대부분 CP명만으로 발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해 통제책임을 지는 이통사명을 함께 표기한다.

- “전송자 연락처 정보”는 다음의 위치에 명시한다.

※ 전송자 연락처 정보는 일반적인 광고 전송 허용시간(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전송자와 언제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같이 광고 수신자가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 ▶ 단순 SMS 광고
 -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 : 회신번호란(‘from’)에 입력
 - 060 특수번호 홍보시 : 본문 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 회신번호란에는 060 특수번호를 입력
- ▶ URL SMS 및 MMS 광고
 - 본문 전송자 명칭에 이어 명시하고, 회신번호란에는 080 등 수신 거부번호 입력
- ▶ 음성광고 : 전송자 명칭에 이어 안내

- 수신동의를 얻은 후 광고를 전송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 안에 손쉬운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본문 끝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즉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이 가능하려면,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하고,
 -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며,
 -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수집하여서는 안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 발신자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등 광고임을 드러내지 않고 수신자의 통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원 링(one-ring)’ 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부재중 전화를 발생시키는 등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 이 때 전화를 걸게 되면, 상담원이 직접 받거나 ARS를 통해 녹음된 060 전화정보·대출 관련한 광고 등 수신자가 원치않는 광고가 전송된다.
- SMS, URL-SMS 광고 전송시 아무런 내용없이 일반 전화번호나 개인 이동전화번호만 남기거나, 사적인 메시지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등 광고임을 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URL SMS, MMS 광고 전송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임을 알 수 없도록 회신번호에 일반 전화번호나 개인 이동전화번호를 남기고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 SMS 및 MMS 광고

• 단순 SMS

(주)△△△
(광고메시지)
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철회)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02-405-4114
또는 15xy-xxxx, 16xy-yyyy

<일반 제품 홍보시>

(주)○○○ 02-405-4114
(광고메시지)
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철회)
080-XXX-YYYY

회신번호(from) : 060-xxx-yyyy

<060 식별번호 홍보시>

• URL SMS 및 MMS

무선인터넷명(필요시, 하부CP명)
02-405-4114
(광고메시지)

회신번호(from) : 수신거부(또는
수신동의철회)080-XXX-YYYY 등

※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통일된 하나의 번호만 기재 가능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 음성광고 (ARS 등)

- 발신번호 : 실제 광고전화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음성광고내용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 XXX(사람이름)입니다. 이 광고에 대해 문의하실 분은 전화번호 02 405 4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내용)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 1번을 눌러주십시오
(또는 080 xxx yyy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 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통일된 하나의 번호만 기재 가능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 XXX(사람이름)입니다.

(광고내용)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1번을,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번을 눌러주십시오(또는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광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080 xxx yyyy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전자적 전송매체’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든 매체

① 개요

이메일은 ‘스팸’이라는 개념의 근원이 된 매체로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지금까지 네티즌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통신수단이다. 이메일은 단순한 텍스트 전송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손쉽게 전송할 수 있음에 따라 모든 비즈니스에서 각광을 받는 매체가 되었고 인터넷 대중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 되었다. 또한 전화와는 달리 전송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까운 경제적 장점과 매우 인간 친화적인 특성이 있어 사업자들 사이에서 저비용고효율의 마케팅 툴로 크게 인정받아왔다.

다만, 원하지 않는 스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메일의 전달률이나 개봉률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현재는 이메일의 효용성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② 준수사항

■ 광고전송시 표기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함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함
 - ※ (광@고) (광 고) (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 수신거부방법은 메일 본문 안에 회신할 전송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광고수신에 동의를 받은 이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 및 “@”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 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의)” 표기를 하는 것을 권장함
- 이 때, 본문란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수신거부 후 재전송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하며, 전송자에게 다른 영업점이 있다면 그들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광고 재전송을 금지해야 한다.

※ 수신자의 수신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의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확인하여 다음번 광고부터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서는 안된다.
- 사람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포털 등 웹메일서비스 계정을 등록 (생성)하여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 예시

- ▶ 전송자 신원 은폐 기술
 - 오픈릴레이 및 프락시 이용, 좀비 감염, 메일헤더정보 및 SMTP정보 조작 등
 -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회피 기술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기재하였으나 고의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가 아닌 타인이 수신하도록 설정 등
 - ▶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생성하는 기술
 - 이메일 ID로 많이 활용되는 영어단어를 조합함으로써 이메일주소를 생성해 내는 기술
 - ▶ 다수의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 기술
 - 스팸 전송에 사용될 이메일주소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반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기술
- ※ 많은 웹메일서비스업체에서 실명확인을 안하거나 1인당 다수의 계정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함

■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 유통 · 이용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된다.
-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및 방지기술 원리

▶ 자동 수집 기술

-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올릴 때 회신할 연락처로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스팸 전송자들이 이렇게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식별·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활용하고 있음
- 모든 전자우편주소는 '@'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은 해당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HTML소스에서 '@' 가 붙은 단어를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수집 방지 기술

- 대표적인 기술로 '@' 를 text로써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를 이미지화하는 방법과 아예 웹상에 전자우편주소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문자 등으로 가려놓은 후 사람여부를 식별하여 공개하는 방법 등이 있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2002.12. 이메일주소 수집방지 프로그램인 '네버스팸(NeverSpam)' 을 개발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co.kr)를 통해 무료로 보급중임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 광고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메일

보낸사람	mr1234@xxxxx.com
받는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광고)화장품 광고@
보낸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귀하의 메일주소는 0000년 0월 0일, <http://www.ooclub.com/~xxxxx/> 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000 (주) 대표전화: 02-xxx-xxxx
 이메일: webmaster@000.com

■ 광고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메일

보낸사람	mr1234@xxxxx.com
받는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동의) 화장품 광고
보낸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000님은 xxx년 xx월 xx일 <http://www.ooclub.com/~xxxxx/> 에서 광고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000님은 xxx년 xx월 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ooclub.com/~xxxxx/> 에서 광고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000 (주) 대표전화: 02-xxx-xxxx
 이메일: webmaster@000.com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 예시

■ 광고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수신자(성인)에게 보내는 성인광고메일

※ 법률 제42조의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성인광고)’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보낸사람	mr1234@xxxxx.com
받는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성인광고) 성인용품 광고@
보낸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귀하의 메일주소는 0000년 0월 0일, <http://www.ooclub.com/~xxxxx/> 에서 취득하였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 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ooo(주) 대표전화: 02-xxx-xxxx
 담당자: ooo 이메일: webmaster@ooo.com

■ 광고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성인)에게 보내는 성인광고메일

※ 법률 제42조의2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경우 ‘(성인광고)’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전송이 금지됨

보낸사람	mr1234@xxxxx.com
받는사람	miss567@xxxxxx.co.kr
제 목	(동의) 성인용품 광고
보낸날짜	Wed, 06 Aug 2003 11:37:23 +0900

ooo님은 xxx년 xx월 xx일 <http://www.oo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ooo님은 xxx년 xx월 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ooclub.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 를 눌러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ooo(주) 대표전화: 02-xxx-xxxx
 이메일: webmaster@ooo.com

다. 기타 매체

스팸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광고 ‘전송’이 아닌 기타 행위(‘게시’나 ‘설치’)에 대해서 규제 확대

① 게시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요

- 스팸은 기본적으로 전송자에서 수신자로 ‘전송’된다는 절차적 구성 요건을 갖고 있으나, 전송이 아닌 다른 행위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쓰레기라는 ‘스팸성향’을 가진다면 스팸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 그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공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광고를 전송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 준수사항

-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게시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게시되는 광고는 불법스팸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으로써 게시판 자동등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무작위적인 광고성 정보 게시행위는 원천 금지된다.

- 물론 법적 처벌 이전이라도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의 게시거부의사에 반하여 게시된 광고성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전송매체와 달리 게시판에서는 게시거부의사를 개별적으로 전송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게시판에 일괄 게시할 수 있다.
- 게시거부의사를 명시할 때에는 해당 거부의사 게시 날짜를 넣고, 해당 게시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는 것이 좋다.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의 거부의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메일 광고와 게시판 광고의 성격 및 규제 내용 비교]

	이메일 광고	게시판 광고
전달 형태	· 광고성 정보 "전송"	· 광고성 정보 "게시"
매개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공개 여부	· 비공개 (수신자의 개인 메일함으로 수신)	· 공개 (해당 게시판 방문자는 모두 열람 가능)
주 피해 주체	· 수신자	·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주 규제 내용	· (광고) 표기 의무 ·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 표시 이후 재전송 금지	·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게시거부 의사 표시 이후 게시금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삭제조치
규제방식 차이의 근거	· 수신자가 1차 광고를 수신한 후에만 수신거부 의사를 전송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 즉, 전송자의 1차 광고권리가 보장됨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게시판 페이지에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 광고게시도 완전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효과를 나타내게 됨

② 애드웨어 (Adware)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개요

-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PC에 팝업 형태의 광고를 띄우거나 시작 페이지를 특정 홈페이지로 고정하는 등의 광고성 프로그램의 설치 역시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 준수사항

- 광고성 프로그램을 이용자 PC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프로그램 설치전에 이용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고지한 후 설치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PC에 설치될 프로그램이 광고성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등을 프로그램 다운로드 전에 식별이 용이한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 단순히 모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OS가 자동으로 띄우는 경고창의 문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에 “예”를 선택하였다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공통 준수 사항

① 청소년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전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할 수 없다.

※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메신저 등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

청소년유해매체를 여부 확인 방법

- ▶ 청소년 보호 위원 회 가 제 공 하 는 「 유 해 매 체 물 검 색 」 서 비 스 (http://www.youth.go.kr/environment/default_retrieval.htm)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 확인
- ▶ 확인방법 : 실명인증 → 유해매체물 검색 DB 열람 → 고시내용 확인

- 또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수 없다.

② 불법 재화 및 서비스 광고전송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 마약 등 정보통신망법이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안된다.

※ 음란물이나 마약 등 불법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나 이용을 직접 규제하는 법규가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나 이용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음

3. 광고전송의 위탁 또는 하계 한 자

가. 광고전송 위탁 행위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① 개 요

- 온라인 마케팅이 발달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1차 법적 책임을 지는 ‘전송자’는 대행사가 될 것이지만, 위탁자 또한 대행사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준수사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 안에 대행업체가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위반시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자율규제해야 한다.
- 또한, 대행업체가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다할 때에 광고를 위탁한 자는 대행업체를 소속직원으로 봄으로써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손해배상이 아닌 행정질서를 위반한 불법 광고전송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직접 전송자인 대행업체가 받음

나. 광고를 하게 한 행위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3. 삭제 <2004.12.30>
4.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① 개요

개정법에 따르면 광고전송 또는 게시 등을 하게 한 자에 대해 해당 행위를 직접 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위탁행위와 구분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받은 자라는 의미는 광고주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로서 당해 광고전송행위만을 위탁받은 자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 제67조1항의 불법 광고전송 또는 게시를 하게 한자는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는 자로 해석한다.
- 따라서 오로지 광고 전송행위를 중심으로 한 업무상 계약관계에만 의거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는 제50조의3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

② ‘하게 한 행위’의 범위

위탁행위와 구분하여 광고를 하게 한 행위를 영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였는데, 실제 그에 해당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케이스별 분석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케이스별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적인 지시나 요구 등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해당 광고자의 마케팅 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 계약서에 광고자의 위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넣거나 마케팅 실적과 특정 광고자를 매칭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실제로 광고를 하게 한 지시, 요구 등을 하였는지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판단

※ 광고내용상 전혀 특정 발송자를 알 수 없고 본사 명칭만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하게 한 자’가 아닌 ‘광고발송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

- 광고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 광고의 패턴(내용 포함)이 동일·유사하거나 광고패턴을 제공하는 등
- 스팸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회원이나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사자원을 스팸경유지에 활용되도록 방치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최근 성행하는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 MCP(Master Contents Provider)와 CP의 관계, 이통사와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인터넷 사이트 또는 호스팅서비스의 파트너십 관계 등에 적용될 수 있다.

- 특정 광고를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영업상 이익을 분배하는 관계에서 광고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 해당 이해당사자는 광고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약시 주의·고지하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온라인상으로만 계약을 할 경우, 해당 광고 행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록 1]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2005. 12. 30 개정)

※ ——— 부분 : 2005.12.30 개정사항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를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의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의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조치
2.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3. 삭제
 4.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3의2.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13의3.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의4. 제46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3의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3의6.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3의7. 제4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14. 삭제
15. 삭제
- 15의2. 삭제

15의3. 삭제

15의4. 삭제

15의5. 삭제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록2]

스팸방지 사업자 표준약관 예시

가. 용어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나. 이용고객의 의무

-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000(회사명)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000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은 000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000(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고객이 신청한 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이용의 정지

- 000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이용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000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 계약의 해지

- 000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마. 000의 의무

- 000는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000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000는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000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中))

구 분		세부 조치사항
1. 관리적 보호조치	1.1.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1.1.1. 정보보호조직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담당자로 구성된 정보보호조직을 운영
		1.1.2.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
		1.1.3. 정보보호조직 구성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와 조직을 총괄 지휘 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 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분야별 실무를 담당
	1.2. 정보보호 계획 등의 수립 및 관리	1.2.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 목표, 범위, 책임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방침(policy) 수립 최고경영층(임원급 이상)의 승인
		1.2.2. 정보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방침을 토대로 예산, 일정 등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정보보호 실행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층이 실행계획을 승인하고 정보보호책임자가 추진 상황을 매 반마다 점검
		1.2.3. 정보보호 실무지침의 마련·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보호 실무지침을 마련 정보보호책임자가 실무지침을 승인하고 관련 법·제도, 설비의 교체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 관리
	1.3. 인적 보안	1.3.1. 내부인력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의 전보 또는 퇴직시 즉시 관련 계정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거 임직원에게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정보보호 실천수칙 보급 등)를 실시 정보보호조직의 구성원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보호교육 실시
		1.3.2. 외부인력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직원이 아닌 자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보안서약을 징구
		1.3.3. 위탁운영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보안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등에 '정보보호에 관한 위탁업체의 책임범위', '위탁업무 중단에 따른 비상대책' 등을 반영
	1.4. 이용자 보호	1.4.1. 정보보호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예·경보, 보안취약점, 계정·비밀번호 관리방안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1.5. 침해사고 대응	1.5.1. 침해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정의 및 범위, 대응체계(보고 및 조치 체계), 대응 방법 및 절차, 복구 방법 및 절차, 증거자료 수집 및 보관 등을 포함한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시행 	
1.6. 정보보호 조치 점검	1.6.1. 보호조치의 자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관리자는 매년 동지침 및 정보보호실무지침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 	
1.7. 정보자산 관리	1.7.1.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현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도를 마련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관리 정보통신설비 및 시설의 목록(용도 및 위치 등 포함) 작성·관리 	

구 분		세부 조치사항
2. 기술적 보호 조치	2.1. 네트워크 보안	2.1.1. 트래픽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주요노드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회선의 트래픽 소용량을 24시간 모니터링
		2.1.2. 무선서비스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랜서비스,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인증, 데이터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
		2.1.3.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망과 연계되는 구간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
	2.2. 정보통신 설비 보안	2.2.1. 웹서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는 단독서버로 운영하고 DMZ에 설치
		2.2.2. DNS서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2.2.3. DHCP서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부하에 대비한 부하분산 대책을 마련 • 설정파일 백업 실시 • IP 할당 상황 등에 대한 로그기록 유지·관리
		2.2.4. DB서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 외부망에서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L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
		2.2.7. 취약점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
		2.2.8. 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된 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 일회용 패스워드 등 • 불필요한 프로토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을 사용하도록 하여 인가 절차를 강화
		2.2.9.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으로 설정 • 단, 설정 가능한 자리수가 8자리 미만일 때는 설정 가능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한 최대의 자리수로 설정
2.2.10. 로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개월 이상 로그기록 유지·관리 (정보보호시스템은 3개월) 		
2.2.11. 보안패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패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입수하고 적용 • 주요 보안패치에 대해서는 적용일 등 패치정보를 기록·관리 		
2.2.12. 백업 및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 • 백업 담당자, 백업 및 복구 방법·절차·주기 등을 기록·관리 		
3. 물리적 보호 조치	3.1. 출입 및 접근 보안	3.1.1. 정보통신시설의 출입·접근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가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1개월 이상 유지·보관
	3.2. 부대설비 및 시설 운영·관리	3.2.1. 백업설비 및 시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보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백업설비 및 시설을 설치·운영

불법스팸 신고 접수 및 상담처
불 법 스 팸 대 응 센 터
홈페이지 : www.spamcop.or.kr
전화 : (국번없이) 1336
